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자산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 KODEX 200

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다. 보관 • 관리기간: 2012. 10. 11 - 2012. 12. 31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에이치엠씨투자증권, 동양증권, SK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제이피모간증권, 케이비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골드만삭스증권,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리딩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도이치증권, KTB투자증권, 엘아이지투자증권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2. 12. 17	제 12 조(투자신탁회계기간)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2년 10월 10일 경과후에 도래하는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기간으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2012년 10월 10일 경과후의 최초회계기간 :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 제 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 2013년 1월 1일 부터

2012. 12. 17	제 38 조(투자신탁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 41 조의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준일(단, 회계기간 말일의 영업일을 제외하며, 이하 “분배금지급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지급일로 한다. 1. 생략 2. 제 1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제 1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기준일까지 3. 생략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 41 조의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준일(단, 회계기간 종료일을 제외하며, 이하 “분배금지급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지급일로 한다. 1. 생략 2. 제 1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직전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도래하는 매분배금지급기준일까지 3. 생략	매 1년간	
2012. 12. 17	제 39 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① 생략 ②제 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 4. 생략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 11. 생략 추 가	① 생략 ②제 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 4. 생략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 11. 생략 12.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2012. 12. 17	제 40 조(투자신탁의)	①집합투자자는 다음 각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		

	해지)	<p>호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2.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추 가</p> <p>추 가</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p>	<p>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수익자 전원 동의를 한 경우</p> <p>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p> <p>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	-----	---	--

		<p>일(이하 “해지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추 가</p>	<p>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p> <p>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p> <p>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p> <p>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p> <p>5.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③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 2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p>
--	--	--	---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012. 12. 17	제 41 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영업일	①-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012. 12. 17	제 48 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_____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_____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사항없음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RESTRICTED - PUBLIC_HSS FS SEL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안진회계법인	1년	330만원	서면계약	-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